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, 현행 법령상 신체상태, 행색 등으로 미루어 수감생활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과금 납부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불가피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,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고,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, 벌과금 등의 액수,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,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,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분할납부 등) ① (생략)	제12조(분할납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, 벌과금등의 액수,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행 가능성,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후단 신설></u>	<u>다만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,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.</u>
③~⑤ (생략)	③~⑤ (현행과 같음)